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6
------------	------

발의연월일 : 2017. 2. 24 .

발 의 자 : 신보라 · 함진규 · 이종배

권석창 · 조훈현 · 경대수

박덕흠 · 조경태 · 정운천

윤종필 · 송희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օ)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9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
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
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
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
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 제>